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제886호 2022. 11. 1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524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 거창군 공고 제2022-1534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8
- 거창군 공고 제2022-1542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위천119안전센터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0
- 거창군 공고 제2022-1556호 거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12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1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271-87 등 8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237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현재 첫째·둘째·셋째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구분없이 대폭 증액 지원하여 출산·양육 지원의 체감효과를 높여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금 증액(안 별표)
 - 1) 첫째 100만원 ⇒ 500만원
 - 2) 둘째 200만원 ⇒ 500만원
 - 3) 셋째 이후 300만원 ⇒ 500만원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라. 전화 055-940-8883, 팩스 055-940-8905, 이메일 heejunk1@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임신·출산지원분야 중 출산축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 출산 지원	출산 축하금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가. 첫째 100만원 <u>500만원</u> 나. 둘째 200만원 <u>500만원</u> 다. 셋째 이후 300만원 <u>500만원</u>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출산 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가. 출산 축하금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다. 임신축하 기념품 등

2.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등

3.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가. 전입정착금

나. 빈집정비 지원

다.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

가. 국적취득자 지원

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타조례 개정2022.4.1.)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거창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
3. 사업시행 개요

종류	위 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비고
		결정 면적	금회 시행면적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4번지 일원	25,694.0	3,376.0	거고 제43호 (2008.9.25.)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2024.12.3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4	과	652	518		거창군				
2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4	과	556	232		거창군				
3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7	임	4,111	1,920		거창군				
4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2	잡	217	217		거창군				
5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	과	413	409		거창군				
6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7	도	72	72		거창군				
7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8	도	8	8		거창군				
합 계				6,029	3,376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위천119안전센터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6-126(2016.12.22.)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명 칭 :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1,633m²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청사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1,618	1,633	77.76	757.06	거창군 제2016-126호 (2016.12.22.)	

다. 세부내용

등별	층별	용도 구조	기정 연면적	증축 연면적 (변경)	소계	비고
주1	지상1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99.74	71.70	371.44	제1종근생 증축
	지상2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65.90	119.72	385.62	제1종근생 증축
합 계			565.64	191.42	757.06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성 명 : 경상남도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9	대	1,633	1,633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거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거창군 공고 제2022-562호(2022.4.6.)로 공고하였으며, 이후 관련부서(기관)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당초 입안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며, 거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거 창 군 수

1. 열람기간 : 2022. 11. 16(수) ~ 11. 30(수)
2.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3.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관련부서(기관) 반영사항(군계획시설)
나. 입안내용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입안내용	재열람내용
신설	7	가조면 일부리 1019번지 일원	-	○ 체육시설 신설: 9,937㎡

※변경이 없는 당초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금회 공람대상에 제외됨

4.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가. 토지의 위치 및 변경내역

- 거창읍 대평리 일원(14필지, 13,406㎡)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가조면 일부리 일원(7필지, 9,934㎡)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나. 변경사유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거창읍 대평리 일원) 및 체육시설 결정(북상면 갈계리 일원)

5.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분할측량 등으로 인한 해제 및 지정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금회 공고로 같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내

나. 제출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다.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

7.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였으며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하며 편입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